

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개정 주요내용

「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이 일부 개정되어 고시(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-103호, 2012.6.11)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. 이번 개정에는 소화기구의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그중 주요변경사항에 대해 소개한다.

□ 개정 주요내용

1. 정의(제3조) 관련 변경내용

- ▶ 수동식소화기를 “소화기” 로,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소화장치를 “자동소화장치” 로 변경
- ▷ 자동식소화기는 “주방용자동소화장치” 로,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는 “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” 로, 자동확산소화용구는 “자동확산소화장치” 로 변경
- ▶ 자동소화장치에 “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”, “가스식자동소화장치”, “분말식자동소화장치” 를 추가
- ▷ 소화약제 및 간이소화용구에 대한 정의 변경

2. 설치기준(제4조) 관련 변경내용

- ▶ 아파트 주방에만 설치하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오피스텔 주방에도 설치하도록 변경
- ▷ 기존 투척용소화기 등 설치기준을 삭제하고, “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” 을 신설
- ▶ 기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설치기준을 “가스식, 분말식,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” 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
- ▷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[별표 1]을 소화기구별(수동식소화기, 자동확산소화용구, 간이소화용구,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)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별(가스, 분말, 액체, 기타)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변경

□ 개정 주요내용 신.구 대비표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소화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동식소화기 ○ (자동식소화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식소화기 - <신설> - <신설> - <신설> -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- 자동확산소화용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화기 ○ 자동소화장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방용자동소화장치 - <u>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</u> - <u>가스식자동소화장치</u> - <u>분말식자동소화장치</u> -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- 자동확산소화장치
소화약제	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	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·액체 및 기체의 물질
간이소화용구	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	에어로졸식소화용구,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
주방용 자동소화장치	아파트 주방에 설치	아파트 및 <u>오피스텔</u> 주방에 설치

□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주요내용

1.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(요약)

-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0.2m 이상 최대 3.7m 이하로 할 것
-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
-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
- 개구부 및 통기구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
-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

2. 가스식, 분말식,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(요약)

-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
-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
-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

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	표시온도
39℃ 미만	79℃ 미만
39℃ 이상 64℃ 미만	79℃ 이상 121℃ 미만
64℃ 이상 106℃ 미만	121℃ 이상 162℃ 미만
106℃ 이상	162℃ 이상

단,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의 화재감지기 설치방법에 따를 것